

2024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본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도 요약 】

##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6

## ■ 평가 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

## ■ 신고기간

- 2024년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 ■ 도입목적

-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에 우대

## ■ 평가방법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해당연도 고용평가 = (정규직수/전체근로자수) + (신규정규직수/정규직수 × 0.1) + (청년신규정규직수/신규정규직수 × 0.1)
- 우대비율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상위 30% 미만	1등급	5/100
상위 30% 이상 70% 미만	2등급	4/100
상위 70% 이상	3등급	3/100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가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 || 목 차 ||

<b>I.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요령</b> .....	5
1. 신고·평가 순서도 .....	5
2. 신고기간 및 문의처 .....	6
3. 제출서류 .....	6
4. 유의사항 .....	7
5. 자주 하는 질문(FAQ) .....	7
<b>II. 전산신고 매뉴얼</b> .....	10
1. 평가신청 안내 .....	11
2. 평가시스템 및 로그인 .....	12
3. 작성 담당자 정보 입력 .....	13
4. 고용현황 .....	14
5. 가산항목 추가 .....	15
6. 고용평가 예상점수 및 신고확정 .....	16
7. 신고확정 취소 .....	17
8. 서류출력 .....	18
<b>III. 관련법령</b> .....	19
1. 건설산업기본법 .....	20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0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21
별지제25호의2서식 .....	23
1-3.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	24
1-4. 고용평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	24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8
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29
3-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3-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4. 근로복지법 .....	30
[별지서식(건설공사 편의시설 설치관련)] .....	32

# I.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요령

1. 신고·평가 순서도	5
2. 신고기간 및 문의처	6
3. 제출서류	6
4. 유의사항	7
5. 자주 하는 질문(FAQ)	8

# I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요령

### 1 신고 · 평가 순서도

구분	협회시스템	주요 내용
신고	<b>신고안내</b> (cak.or.kr/icm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안내</li> <li>- 교재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li> </ul>
	<b>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시스템</b> (icm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내용 입력 및 검토</li> <li>- 신고내용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확인 후 ‘신고확정’</li> <li>- 확정기간 : 4.1. ~ 4.15.</li> <li>※ 신고확정 후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확정취소’ 후 재작성 가능</li> <li>※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온라인상 필요서류 업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내용 조회 및 출력</li> </ul>
평가	<b>신고시스템</b> (icm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현황 및 보완서류 확인(마이페이지) : ~ 6월중</li> <li>● 중간평가결과 확인 : 6월중</li> <li>※ 검토내역을 별도 우편송부 하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평가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업체에게 있음</li> </ul>
결과 공시	<b>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b> (www.cak.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시 : 6월말</li> <li>- 시공능력평가에 반영(7월말)</li> </ul>

## 2 신고기간 및 문의처

- 신고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4월 15일(월)
- 문의처 : (회원사·비회원사) 02-3485-8321

## 3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li> </ul>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전년도, 전전년도*) * 전년도 고용평가 신고업체는 제출 불필요</li> </ul>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은 건설사업자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 사본</li> </ul>	해당할 경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 증빙서류(화장실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로 각 현장별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인서류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와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기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복지제도 증빙서류 - 「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동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로 전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전년도에 제공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ul>	〃

☆ 동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별도 우편 또는 방문제출 불필요

## 4 유의사항

---

-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온라인 서류제출·내용확정**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별도의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다만, 신고내용의 검토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나.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신고한 내용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간 검토결과를 통합실적신고시스템(icms.cak.or.kr)에서 6월중에 확인 가능**
- 다. 가산항목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을 전부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설치 안한 현장이 있거나 편의시설을 전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인정
- 라. 가산항목에 2가지 이상 해당되더라도 **중복가산되지 않으며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만 가산됨에 유의**

## 5 자주하는 질문 (FAQ)

---

### Q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란

- »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고용실태,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여 매년 6월말 고시하고, 시공능력평가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의 3~5%를 가산

### Q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의무사항인지?

-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고시 매년 고용평가 결과가 공시되며 시공능력평가지 가산받을 수 있음

### Q3. 신고기간은 언제?

- » 재무제표 신고기간(4.1~4.15)과 동일하며, **통합실적신고시스템(icms.cak.or.kr)으로 접속후 신고**

Q4.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는 어느 협회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시 어느 업종에 가산받는지?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 등 어느 협회로 신고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시공 능력평가액이 큰 업종에 가산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Q5. 2023년도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했는데 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전년도 고용평가(2023년)에서 전전년도 고용평가(2022년) 점수를 차감하여 평가하므로 올해 고용평가 점수 산정은 불가능

Q6. 작년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고하지 못했는데 올해 신고하면 고용평가를 받을수 있는지?

»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2개년도를 신고한다면 평가 가능

Q7. 법인에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근로자외 다른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되는지?

» 법인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평가함. 건설근로자 여부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의 표준 사업분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건설업이면 해당됨

Q8.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어느 시점의 근로자현황이 반영되는지?

» 2023년도 및 20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의 건설근로자 현황으로 고용평가 점수를 매겨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함

Q9.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중복  
가산(20%) 받을 수 있는지?

» 가산항목중 2개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가산 불가능

Q10. 일부 건설현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가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전부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남녀구분), 식당을 각각의  
현장에 전부 설치해야 함.

증빙서류로는 각 현장별 화장실, 탈의실, 식당 사진을 전부 첨부  
하여 제출

## Ⅱ. 전산신고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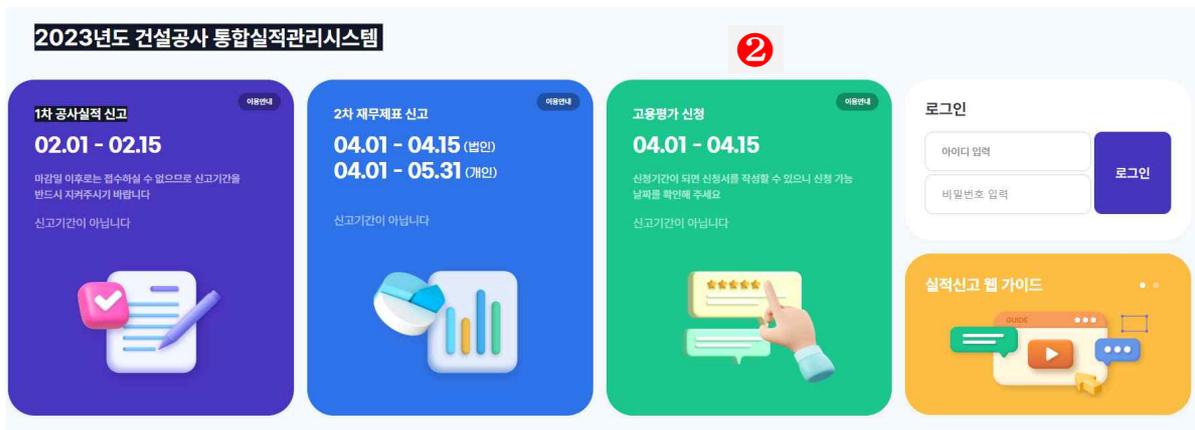
1. 평가신청 안내	11
2. 평가시스템 및 로그인	12
3. 작성 담당자 정보 입력	13
4. 고용현황	14
5. 가산항목추가	15
6. 고용평가 예상점수 및 신고확정	16
7. 신고확정 취소	17
8. 서류출력	18

# 1 | 평가 신청 안내



## ① 협회 홈페이지(cak.or.kr) 안내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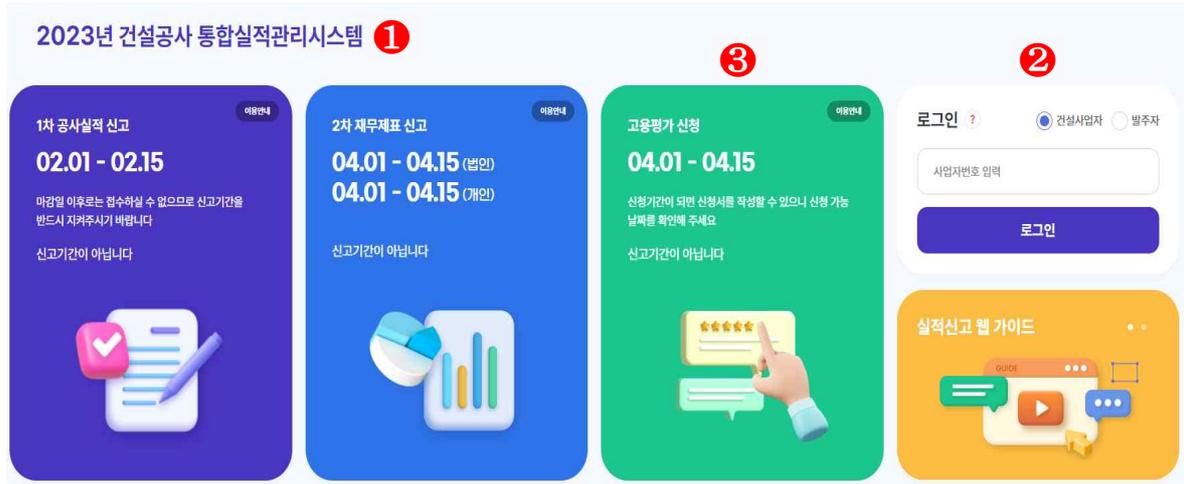
협회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202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접수 안내” 클릭 → “2024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 ② 2023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활용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공지사항에서 안내문 참조

# 2 | 평가신청 시스템 및 로그인



## ① 신고시스템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을 통한 신청
- 1차 공사실적 신고(2월초 운영)와 동일 시스템 이용
- 신청기간(4.1-15) 중에만 활성화되어 접속 가능

## ② 로그인 : 1차 실적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

- 사업자번호 입력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

### ※ 로그인을 위한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국가공인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 1688-2370
- 대한건설협회 시스템 이용 시 "범용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협회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업무제휴로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 40% 할인

## ③ 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 고용평가 신청 클릭

# 3 | 작성담당자 정보입력



## 1 업체정보 입력

- 우선 업체정보를 입력해야 함
- 업체정보는 업체정보관리/대표자관리/담당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체정보, 대표자 정보는 1차 실적신고시 등록한 내용과 일치하면 통과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저장

## 2 작성 담당자 관리 항목 입력

- 담당자 관리는 실제 고용평가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사항으로 빠짐 없이 입력 후 저장, 담당자 복수 입력도 가능

※ 작성담당자의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는 중간검토 결과 및 제출 서류의 보완사항 등의 안내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요망

### <고용평가 신청 절차>

작성담당자 ➔ 고용현황 ➔ 가산항목추가 ➔ 고용평가 예상점수 확인 ➔ 신고확정

# 4 | 고용현황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업체정보

기술인·신인도

종합사업자신고

재무제표

**1** 고용평가

서류출력

마이페이지

계시판



고용평가

## 고용평가 신고

**2**

• 고용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표6 ] 참조 ?

**4**

저장

삭제

구분	전년도(23.12.31일 기준)		전전년도(22.12.31일 기준)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sup>㉔</sup>	100	120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 <sup>㉕</sup>	15	1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sup>㉖</sup>	7	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sup>㉗</sup>	5	6		

- <sup>㉔</sup>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전체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함(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고용보험법제2조제6호]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고용보험법)
- <sup>㉕</sup> 2년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수)는 기준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함.
- <sup>㉖</sup>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함.
- <sup>㉗</sup> 청년 신규 근로자 수는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함.

• 고용보험 취득자내역 업로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 (검색기준일 : 2022.1.1 - 현재)

**3**

통합파일 업로드

계산용 양식 다운로드

**4**

**5**

가산항목 신청 이동

### 1 고용평가 신고 작성

· 고용평가 신청은 고용평가신고와 신고확정 2단계로 진행됨

### 2 고용평가 신고는 고용현황, 고용보험 취득자내역 업로드, 가산항목추가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현황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취득자내역”을 참고하여 2023년 및 2022년 고용현황을 입력·작성

### 3 입력할 숫자는 계산용 양식(excel)을 다운받아 계산할 수 있음

### 4 해당 자료 입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내역’ 등을 통합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후 저장(기존 자료 삭제후 저장 가능),

### 5 가산항목이 있는 경우 가산항목 신청이동 클릭

# 5 | 가산항목추가

## 고용평가 신고

• 가산 항목

2

저장

구분	신청	첨부서류	첨부서류																									
가족친화 인증 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유효기간 종료되지 않은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input type="checkbox"/>	관내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상황보고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선택적 복지제도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증빙 (전산관리서비스 제3자위탁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p>신규 계약(계약금액 1억이상) 건설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내역 신고서 및 발주자(갑리자)가 확인한 설치 확인서, 설치 사진 등 (현장별 증빙서류 필요) * 현장별 편의시설 화장실(남녀), 식당, 탈의실(남녀) 모두 설치하여야 함</p> <p>귀 업체는 2022년도 신규계약 공사중 총계약금액 1억원 이상 현장은 모두 (4)개입니다. (4)개 현장의 모든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가산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고번호</th> <th>공사명</th> <th>발주자명</th> <th>총계약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210003</td> <td>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td> <td>-</td> <td>-</td> </tr> <tr> <td>2</td> <td>20210004</td> <td>건설회관 주차장 공사</td> <td>-</td> <td>-</td> </tr> <tr> <td>3</td> <td>20210005</td> <td>상호해외공사</td> <td>해외공사</td> <td>-</td> </tr> <tr> <td>4</td> <td>20210006</td> <td>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진입로공사</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회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외공사	해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진입로공사	-	-	<p>1</p> <p>통합파일 업로드</p>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회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외공사	해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진입로공사	-	-																								

3

고용현황 이동

1 가산항목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부분에 신청을 체크후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파일 업로드후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2 입력 및 업로드 후 저장

3 확인 및 저장 완료 후 고용현황 이동 클릭

※ 가산항목에 2개 이상 해당되더라도 중복 가산되지 않으므로 가산항목 신청시 참고

# 6 | 고용평가 예상점수 확인 및 신고확정

## 신고확정

### • 고용현황 신고내역

구분	전년도	전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㉓	100	120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 ㉔	15	1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㉕	7	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㉖	5	6
<b>1</b> 고용평가점수	0.268	0.269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산점수) *가점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 가산		-0.001 (0)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양의 수인 경우에만 등급산정이 되며, 시공능력평가에 우대됩니다.(21년 시평부터 적용)

### • 가산항목 신청 내역

구분	신청	첨부서류																									
가족친화 인증 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유효기간 종료되지 않은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input type="checkbox"/>	관내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상황보고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선택적 복지제도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증명 (전산관리서비스 제3자위탁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신규 계약(계약금액 1억이상) 건설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내역 신고서 및 발주자(감리자)가 확인한 설치 확인서, 설치 사진 등 (현장별 증명서류 필요) * 현장별 편의시설 화장실(남녀), 식당, 탈의실(남녀) 모두 설치하여야 함 귀 업체는 2022년도 신규계약 공사중 총계약금액 1억원 이상 현장은 모두 (4)개입니다. (4)개 현장의 모든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가산 인정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고번호</th> <th>공사명</th> <th>발주자명</th> <th>총계약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210003</td> <td>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td> <td>-</td> <td>-</td> </tr> <tr> <td>2</td> <td>20210004</td> <td>건설회관 주차장 공사</td> <td>-</td> <td>-</td> </tr> <tr> <td>3</td> <td>20210005</td> <td>상호해외공사</td> <td>해외공사</td> <td>-</td> </tr> <tr> <td>4</td> <td>20210006</td> <td>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회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외공사	해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	-	-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회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외공사	해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	-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산항목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가 가산됩니다

**2**

신고 확정

### 1 해당 숫자를 입력하면 고용평가 예상점수가 자동 산정됨

※ 해당점수는 확정된 점수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람(업체 제출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가 상이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평가 점수가 산정됨)

### 2 신고내용 및 예상점수 확인을 완료하고 "신고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평가 신청이 완료됨

# 7 | 신고확정 취소

## 신고확정

### • 고용현황 신고내역

구분	전년도	전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㉔	100	120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 ㉔	15	1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㉔	7	8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무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㉔	5	6
고용평가점수	0.268	0.269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산점수) *가점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 가산		-0.001 (0)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양의 수인 경우에만 등급산정이 되며, 시공능력평가에 우대됩니다. (\*21년 시평부터 적용)

### • 가산항목 신청 내역

구분	신청	첨부서류																									
가족친화 인증 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유효기간 종료되지 않은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input type="checkbox"/>	관내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상황보고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선택적 복지제도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증명 (전산관리서비스 제3자위탁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신규 계약(계약금액 1억이상) 건설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내역 신고서 및 발주자(갑리자)가 확인한 설치 확인서, 설치 사진 등 (현장별 증명서류 필요) * 현장별 편의시설 화장실(남녀), 식당, 탈의실(남녀) 모두 설치하여야 함 귀 업체는 2022년도 신규계약 공사중 총계약금액 1억원 이상 현장은 모두 (4)개입니다. (4)개 현장의 모든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가산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고번호</th> <th>공사명</th> <th>발주자명</th> <th>총계약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210003</td> <td>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td> <td>-</td> <td>-</td> </tr> <tr> <td>2</td> <td>20210004</td> <td>건설화관 주차장 공사</td> <td>-</td> <td>-</td> </tr> <tr> <td>3</td> <td>20210005</td> <td>상호해미공사</td> <td>해미공사</td> <td>-</td> </tr> <tr> <td>4</td> <td>20210006</td> <td>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화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미공사	해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	-	-
구분	신고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총계약금액																							
1	20210003	지하철공사 중 건축공사 아파트	-	-																							
2	20210004	건설화관 주차장 공사	-	-																							
3	20210005	상호해미공사	해미공사	-																							
4	20210006	육길동 전원주택 차량전입로공사	-	-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산항목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가 가산됩니다

1

확정 취소

• 2024.03.04 10:54:19 고용평가 신고 내용확정 완료되었습니다.

**1** 신고확정 후에는 신고확정이 확정취소로 바뀌어 활성화 됨. 신고확정 후 내용 수정이 발생할 경우 확정취소를 클릭하여 수정입력 가능(신고기간 내)

# 8 | 서류출력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내용확정 현황** | (주식회사) 대한건설 | 세선만료 남은시간 - 00:59:22 | 시간연장 | 로그아웃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 업체정보 | 재무제표 | 고용평가 | **서류출력** | 마이페이지 | 게시판

1

## 서류출력

- 고용평가 현황**

고용평가점수(전년도)	가산점수	가산항목 신청 내역
고용평가점수(전년도)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 출력 서식 목록**

실적신고(1차) | 재무제표신고(2차) | 고용평가

내용 확정 후 작성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전 출력시, '본 인쇄물은 실적신고용이 아닙니다.'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됨)  
출력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출력

서식	서식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재무제표신고 현황**

- 작성중
- 확정
- 결제
- 출력
- 접수완료

문의전화

대한건설협회  
051-906-9000

## 1 신고한 내용의 서류 출력이 가능

※ 내용확정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므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불필요

### Ⅲ.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20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1
별지제25호의2서식	23
1-3.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	24
1-4. 고용평가 위탁기관 지정 고시	27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8
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9
3-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3-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4. 근로복지법	30
별지서식(건설공사 편의시설 설치 관련)	32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 별표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text{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text{전년도 고용평가} - \text{전전년도 고용평가}$
--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평가 계산식	
고용평가	$= \frac{\text{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text{전체 건설근로자 수}} + \left( \frac{\text{신규 정규직 수}}{\text{정규직 수}} \times 0.1 \right) + \left( \frac{\text{청년 신규 정규직 수}}{\text{신규 정규직 수}} \times 0.1 \right)$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
  -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종합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전문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전년도	전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 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수로 작성합니다.
2.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3.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4. 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5. 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3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평가 신청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서류의 제출 및 검토)**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 신청자의 서류제출을 갈음하거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당해년도 고용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가점우대의 세부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 사본을 제출한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로 각 현장별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에 신규로 계약한 전체 건설현장 목록, 신규 건설현장 중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설현장 목록, 현장별 시설 설치사진, 설치내역서 등)를 제출한 자
3.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와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기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4.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동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로 전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전년도에 제공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제5조(등급산정의 세부기준)**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양의 수가 아닌 건설사업자는 등급산정에서 제외한다.

- ②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전년도 고용평가가 1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평가등급이 2, 3등급이거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양의 수가 아닌 경우에도 1등급을 부여한다.
- ④ 평가 신청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구분한다.

**제6조(평가자료의 보관·관리 및 전산화)** ① 평가기관은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3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평가신청 및 서류제출, 평가자료 전산관리 등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공시)** 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결과는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또는 평가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시한다.

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고용평가등급

**제8조(우대사항 적용)**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동법 제23조의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동 지침 제7조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평가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연도의 평가등급을 취소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4 고용평가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7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분하여 위탁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한다.

#### 3.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3-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li> <li>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ol>
식당	<p>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p>
탈의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li> </ol>

## 4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지서식)

## 2023년도

### 건설공사 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내역 신고서

(단위:백만원)

신고 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공사예정금액)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 관련하여 화장실·식당·탈의실을 모두 설치(이용조치)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 호 :

주업종·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 첨부 : 1. 건설공사 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확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 원본)  
2.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 및 편의시설 관련 내역서(해당부분) 등(원본대조필)  
3. 현장별 편의시설 설치사진, 임대(이용)계약서 등

#### ※ 작성시 주의사항

- 2022년 신규로 계약하고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총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의 모든 현장에 대해 신고해야 함.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 된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 공사예정금액(총계약금액)이 1억원이상인 공사 중 미설치 현장이 있는 경우는 가산불가

(별지서식의 첨부)

(2023)년도 건설공사 현장별 편의시설 설치 확인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⑤공사명		⑥총계약액 (공사예정금액 기준)	백만원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 신고번호	⑩ 계약 년월	⑪ 착공 년월	⑫ 편의시설	⑬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당"O"표시)	⑭위치 (해당"O"표시)
-			화장실 (남녀구분)		현장내 ( ) 현장밖 300m이내 ( )
			식당		현장내 ( ) 현장밖 ( )
			탈의실 (남녀구분)		현장내 ( ) 현장밖 ( )

⑮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 관련하여 화장실·식당·탈의실을 모두 설치(이용조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또는 감리자)

-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인)
- 주 소
- 전화번호